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74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구분	시설현황
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5층, 8~10층)</li><li>- 전용면적 : 3,665<math>m^2</math></li><li>- 주요시설 : 감사실, 연구평가본부, 사업1본부(복지협력실), 사업2본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영기획실 등</li></ul> 
흑석동 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6층)</li><li>- 전용면적 : 814.64<math>m^2</math></li><li>- 주요시설 : 사업1본부(복지사업실, 서울복지교육센터), 사업2본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li></ul>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 '25년 총 소요예산(안) : 80,709,888천원

라. '25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57,196,320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경비 등) : 23,513,568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시민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복지정책과 이수호 (☎ 2133-7332)